

의안번호	2218356
의 퇴 인	배준영 의원
회 답 일	2026. 4. 21.
추계번호	26A218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3 (전략광물의 비축)	○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광물을 비축할 수 있음 － 전략광물 비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구매, 보유, 관리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3조의5 (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 정부는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개발을 촉진하고자 금융·투자·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의3 (전략광물의 비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의5 (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광물을 비축하거나 전략광물의 해외 개발 촉진을 위한 금융·투자·보증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된 원재료 중 국가의 안보·산업·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제1항)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략광물로 지정할 광물과 해당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비축 규모 및 해외 개발 촉진 지원의 내용·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 개정안은 전략광물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 전략광물 비축의 대상·규모·방식·절차 및 관리, 해외개발의 추진 및 지원의 대상·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경제안보품목등은 현행법상 비공개¹⁾로 관리되고 있어 품목별 세부 내용의 파악이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제6항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